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919
- 발 의 자 : 권미경 의원 외 15명
- 발 의 일 : 2015년 11월 26일
- 회 부 일 : 2015년 11월 30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관계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 비용추계 : 별 첨

5. 검토의견

가. 정의(안 제2조)

- 본 제정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구축,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는 빅데이터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이라고 정의하였음.
- ※ 현행 법령 등에서 빅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1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96호)」 등에서는 빅데이터를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로 정의하고 있음.
- 빅데이터의 개념은 원래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바,¹⁾ 동 조례안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1) 빅데이터(Big Data)의 개념은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인력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임(빅데이터 마스터플랜 2012.11.28)

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령 및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며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다.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관련(안 제8조 내지 제11조)

-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및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즉,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심의 등을 위해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²⁾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의거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³⁾

2)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와 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조정 기능 비교〉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기능	정보화전략위원회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공공데이터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가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역할·기능에 대한 중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행정기구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⁴⁾

※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조례간 일관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중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본 조례안의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지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화위원회 등의 지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지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지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2.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3.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라.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구성(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빅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빅데이터의 분석·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센터’의 업무가 현재 ‘정보기획관’의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업무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빅데이터센터와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 비교〉

빅데이터센터의 기능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
1. 서울시가 확보한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시민 참여 활성화	1.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2.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지원	2.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업무 총괄조정
3. 빅데이터등을 이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 지원	3. 빅데이터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등을 기반의 시민 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4.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
5. 빅데이터등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5. 빅데이터 분석·융합 및 해결책 도출
6. 빅데이터등의 분석과 가공, 전문인력의 양성	6.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및 제공
7. 빅데이터등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7.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빅데이터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8.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9. 빅데이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현재